
		<h2>보 도 자 료</h2>			
보도 일시	2022. 3. 3.(목) 12:00 2022. 3. 4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3. 3.(목) 12:00		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원주 (044-202-7368)	
		담당자	사무관	박경구 (044-202-7374)	
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「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 사업 시행 공고 -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,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3월 4일(금)에 「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(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)」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.
-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‘특고’)·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
 -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·2·3·4차)을 지원받은 특고·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,
 -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·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.
- 다만,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,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.
 -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%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,
 - 고용상황,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

지원에서 제외된다.(기존 지원 대상의 15%)

<지원 제외 직종>

- ①보험설계사, ②택배기사, ③가전제품설치기사, ④대출모집인,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, ⑥골프장캐디, ⑦건설기계종사자, ⑧화물자동차운전사, ⑨퀵서비스기사

□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·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”라고 밝혔다.

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(1·2·3·4차)을 지원받은 경우

<지원대상 및 내용>

□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(1·2·3·4차)을 지급받은 특고·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‘지원 제외 직종’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.

* (지원 제외 직종) ①보험설계사, ②택배기사, ③가전제품설치기사, ④대출모집인, ⑤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⑥골프장캐디, ⑦건설기계종사자, ⑧화물자동차운전사, ⑨퀵서비스기사

○ 다만, 22.1.31. 기준 고용보험(근로자)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·교사·군인(입영 포함)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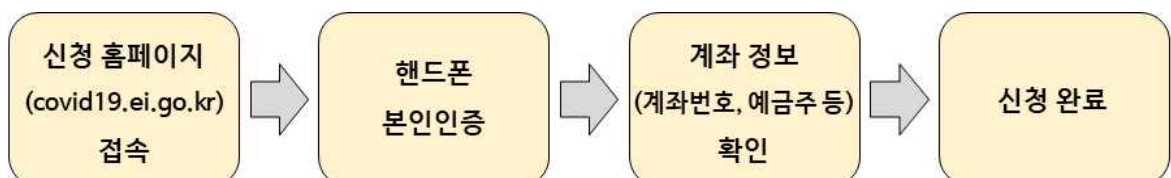
*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,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종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** '21.12.1.~'22.1.31. 기간 내 고용보험(근로자)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

<신청기간 및 방법>

□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(월) 9시부터 3월 11일(금) 18시까지 신청 누리집(covid19.ei.go.kr, PC만 가능)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< 온라인 신청 방법 >



□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(목), 3월 11일(금) 이틀간 신분증,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*할 수 있다.

* 업무시간인 9시~18시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. 단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**

○ 특히,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.

□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 등)를 수정하는 절차*로,

*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.11.(금)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

○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.

- 다만,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.

○ 특히,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.

- ①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②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
 - ③ 1·2·3·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 - ④ 1·2·3·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 등)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* (예)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('21.3.29.~4.2.)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

□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누리집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,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.

〈중복수급 관련〉

□ 동 지원금(50만원)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(중기부),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문화부)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.

* (중복수급 불가) 소상공인 방역지원금(중기부),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

(문화부),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(고용부),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, 시내·마을 버스非공영제 및 시외·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(국토부)

** 다만, 추후 공고 예정인 '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문화부)'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**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**

-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,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한편,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동 지원금(50만원)과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다.
 - 다만,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·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.

〈지원시기〉

-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(금)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(금)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
 - 다만,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.

②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·2·3·4차)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(신규 신청)

〈지원대상 및 내용〉

-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·프리랜서 가운데 '21년 10~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'지원 제외 직종*'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(근로자)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.
 - * (지원 제외 직종) ①보험설계사, ②택배기사, ③가전제품설치기사, ④대출모집인, ⑤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⑥골프장캐디, ⑦건설기계종사자, ⑧화물자동차운전사, ⑨퀵서비스기사
- **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,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다만,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(근로자)에 가입한 특고·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'21년 10~11월 중
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.

- 한편, 사업을 공고한 '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,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*(지원 직종에 한정)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.

*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방문점검원, 방문교사, 학습지교사, 방과후교사

〈지원요건〉

- **자격요건** 특고·프리랜서로서 '21년 10~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, '20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.

- **소득감소요건** 또한, 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* 소득에 비해 25%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.

* ①'21.10월, ②'21.11월, ③'19년 연평균 소득, ④'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

-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(연수입), ②소득감소 규모,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.

〈신청기간 및 방법〉

- 신규신청은 3월 21일(월) 9시부터 3월 29일(화)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(covid19.ei.go.kr, PC만 가능)에서 할 수 있다.

-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,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,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.
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(목)부터 3월 29일(화)까지 업무시간(9시~18시) 내에 신분증,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.

- 다만,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(3.24.~25.)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.

신청일	24(목)	25(금)	28(월)	29(화)
출생연도 끝자리	홀수(1,3,5,7,9)	짝수(2,4,6,8,0)	누구나	

□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,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*이다.

*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
〈중복수급 관련〉

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(중소벤처기업부)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, '21.12월~'22.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자는 동 지원금(100만원)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.

<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>
◇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('21.12~'22.1월 중 세대주 수급자, 보건복지부)
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(중소벤처기업부)
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문화체육관광부)
◇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(고용노동부)
◇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, 시내·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·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(국토교통부)
※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

○ 다만,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·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.

□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(☎1899-9595)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*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 → '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' 검색



보도자료 2



보도자료



보도 일시	2022. 3. 8.(화) 10:00 2022. 3. 8.(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3. 8.(화) 10:00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태웅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수 (044-202-8831)

마트·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
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 -

- 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-

- 정부는 3월 8일(화)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(이하, '특고 종사자')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」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.
-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.
 -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*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,
 - *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택배기사, 쿼서비스기사, 가전제품설치기사 등
 -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'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*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,
 - * (기존) 사유 제한없음 ⇒ (개선) 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,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
-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,938만명*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

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('21년 말)으로 대폭 증가했다.

*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통계('21년 12월 말 기준)

□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,

○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,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(50%) 원천징수

**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,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% 징수(단, 적용제외 신청·승인 받은 경우는 보상불가)

○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.

□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 기사,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.

① 유통(마트 등)배송기사 (약 10만명)

○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(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)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,

- 물류센터에서 점포(대형마트, 편의점, 기업형 슈퍼마켓 등)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, 물류센터에서 음식점(체인점, 구내식당 등)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.

② 택배 지·간선 기사 (약 1.5만명)

○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(택배물품)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·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.

③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(약 3천명)

-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(카캐리어) 또는 곡물 등(밀가루 등 곡물 가루, 곡물 또는 사료)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.
-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더 많은 특고·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”라고 하면서,
 - “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타송기사, 셔틀버스 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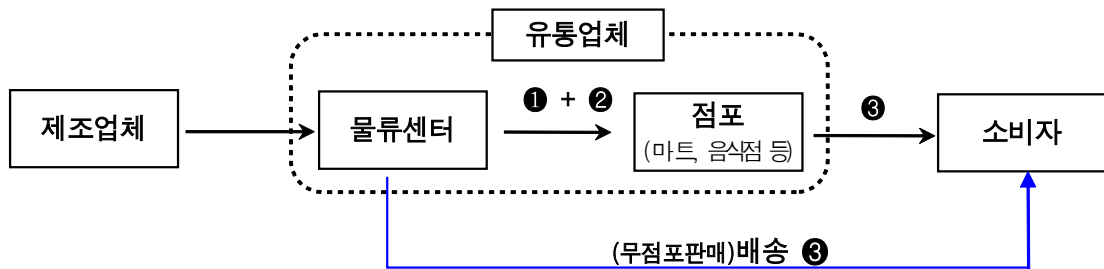


붙임 1

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확대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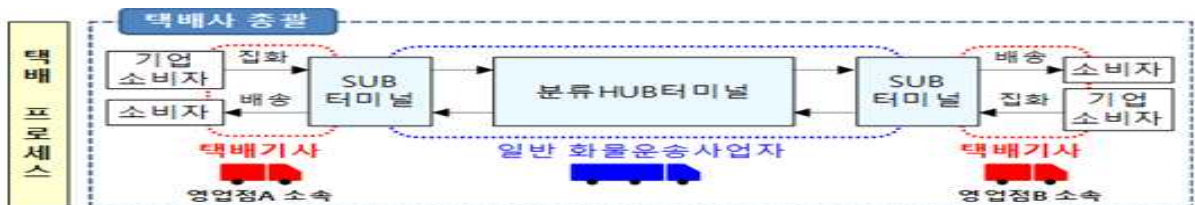
1 유통배송기사 (마트배송기사 등)

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(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)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
 - 종사자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
 - ① 물류센터에서 점포(대형마트, 편의점, 기업형 슈퍼마켓 등)로 일반상품 배송
 - ② 물류센터에서 음식점(체인점, 구내식당 등)으로 식자재 배송
 - ③ 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 배송



2 택배 지·간선 기사

- 택배사업에서 터미널 ⇄ 터미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지·간선 기사 (일반 화물운송 사업자)로 종사자 규모는 약 1.5만명



3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

-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①자동차(카캐리어) 또는 ②곡물(밀가루·사료 등)을 운반하는 화물차주, 종사자 규모는 약 3천명

구분	자동차 (카캐리어)	곡물
차량		
화주	자동차를 제조·수출하거나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	밀가루, 사료 등 주로 곡물을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업체

□ **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**

유통산업		정의	세분류	유통회사 예시
유점포 판매	대규모 점포	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며,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㎡ 이상	대형마트	홈플러스, 이마트, 롯데마트, 하나로마트 등
			전문점	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
			백화점	현대, 신세계, 롯데, 갤러리아, NC, 애경 등
			쇼핑센터	뉴코아아울렛, 롯데아울렛 등
			복합쇼핑몰	
	준 대규모 점포	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	슈퍼마켓	롯데슈퍼, 홈플러스 익스프레스, 이마트 에브리데이, GS리테일, 농심 메가마트, 뉴코아 김스클럽마트 등
			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	
	체인 사업	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·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	직영점형	(편의점) 이마트24, 세븐일레븐, GS25, CU, 바이더웨이, 미니스톱, StoryWay 등 (의류) 나이키, 해지스, 빈폴 등 *백화점·아울렛 입점업체 포함 (기타) 다이소, 화장품(올리브영 등)
			프랜차이즈형	
조합형			슈퍼마켓협동조합 등	
무점포판매	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	전자상거래 (온라인유통)	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형태로 대형 백화점, 대형 할인점 등도 동시 운영 (ex.마켓컬리, SSG, 쿠팡 등)	
		TV 홈쇼핑	방송 매체를 통한 소매업태의 하나로 쇼 호스트의 상품 설명, 모델들의 시연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 채널	
		기타	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, 다단계판매, 전화권유판매,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	

□ **음식점업**

- (체인사업) 제과(빠리바게트, 푸레쥬르, 베스킨라빈스 등), 치킨(BBQ, BHC 등), 피자(피자헛, 도미노 등), 커피(스타벅스, 파스쿠찌 등), 햄버거(롯데리아, 맥도날드, 버거킹 등), 외식업(VIPS 등 패밀리 레스토랑)
- (단체급식사업) 삼성웰스토리, 아워홈, 현대그린푸드, CJ프레시웨이, 신세계푸드, 풀무원푸드앤컬처 등

- (개념)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‘특고 종사자’)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포괄
 - 산재보험법은 특고 종사자의 개념적 징표로 ①전속성, ②노무제공의 계속성, ③업무 수행의 비대체성 명시

<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>

-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**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**
 1.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
 2.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- (적용직종) '08.7.1.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첫 적용, 이후 지속 확대

【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경과】

- ('08.7월)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학습지교사, 레미콘기사
- ('12.5월)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
- ('16.7월)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리운전기사
- ('19.1월) 전체 건설기계조종사(레미콘기사 → 덤프트럭, 굴삭기, 지게차 등 27개)
- ('20.7월)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설치기사, 방문교사
- ('21.7월) 소프트웨어 프리랜서

- (적용방식) 당연적용 →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가입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관계 성립, 가입 여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보상 가능
 -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, 특고 종사자는 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외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적용제외 가능

[참고] 특고 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실시('21.7.1.~)

- 질병·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
- (기존) 사유 제한없음 ⇒ (개선) 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,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*
 - * ① 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,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, ③천재지변·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

<법적 지위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관계>

구분	근로자	특고 종사자	자영업자
적용방식	당연적용	당연적용	임의가입
보험료 부담	사업주	사업주와 본인1/2	본인 100%
미가입시 보상	가입이 누락되더라도 보상 가능		미가입시
	* 단 특고 종사자는 적용제외 신청 시 보상 불가		보상 불가